문서번호	유통관리팀-459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6.02.23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	강서지사장	사장
이태진	박병준	노계호	02/23 박현출
협 조			
감 사			

강서시장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보고

2016.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Ⅰ. 진행 순서

진행 개요

○ 개 회
○ 위원장 인사
○ 참석 위원 소개
○ 강서시장 현황 보고
○ 안건 보고 및 토의(보고 3건, 검토 2건)
- 제1호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 평가 연구 용역 결과 보고
- 제2호 : 시장도매인 시장사용료 부과 방식 변경 검토
- 제3호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 조합 설립 추진 보고
- 제4호 : 유통시설 및 방음벽 설치 추진 보고
- 제5호 : 강서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검토
○ 폐회

Ⅱ.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직 책	비 고
서울시(1명)	장영민	민생경제과장	당연직 위원
공 사(1명)	노계호	강서지사장	
유통인 및 하역단체 (6명)	임정상	서부청과㈜ 대표이사	위촉직
	이구복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	
	김세일	농협강서(공) 채소중도매인 조합장	
	장길석	강서청과㈜ 과일중도매인 조합장	
	양정현	서농물류㈜ 대표이사	
생산자(단체) (3명)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위촉직
	김성응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	
구매자(단체) (2명)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회장	위촉직
	임종곤	㈜세계로마트 부사장	
유통전문가 (7명)	하석건	㈜한서아그리코 대표	위촉직 (서울시장 추천)
	양성범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이재석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촉직 (시의회 추천)
	유종순	(사)한국신지식인협회 자문위원	
	성진근	(사)한국농업경영포럼 대표	위촉직 (공사 선임)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연구부 선임위원	
	강갑봉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Ⅲ. 회의자료 :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자료(붙임 참조)

[붙임]

2016년도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 의 자 료

2016. 2. 25.(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진 행 순 서

○ 개 회 ····· 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위원장

○ 참석 위원 소개 ····· 위원장

○ 강서시장 현황 보고 ····· 업무지원팀장

○ 안건 보고 및 토의 ····· 위원장

제1호.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 평가 연구 용역 결과 (보고) ····· 1

제2호. 시장도매인 시장사용료 부과 방식 변경(검토) ····· 12

제3호.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설립 추진(보고) ····· 17

제4호. 유통시설 및 방음벽 설치 추진(보고) ····· 21

제5호. 강서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검토) ····· 24

○ 폐 회 ····· 위원장

안건 1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평가 연구 용역 결과 보고

2016. 2. 2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평가 연구용역 결과

※ 연구용역 수행 :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2015. 6 ~ 11월)

1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 성과

□ 평가 방법

○ 설문 조사(한국갤럽 주관)

- 조사 개요

조사 기간	조사 대상(응답자 수)	조사 방법
2015. 8.13~31	출하자 1,686명(589명) 유통인 100명(96명), 구매자 743명(219명)	출하자/구매자(전화조사) 유통인(방문조사)

* 출하자 응답자 589명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출하 경험자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만 출하 : 104명(21.4%)
  - 가락시장 등 경매제시장 동시 출하자 : 485명(78.6%)

○ 통계 분석

- 가격 분석 : 강서시장 부류별 상위 5개 거래 품목 분석
- 물류 효율성 분석 : 시장 내 화물차 대기시간 절감 비용 분석
- 시설운영 효율성, 파렛트화율, 대금결제, 거래실적 등 분석

○ 면담 조사

- 산지유통조직 2개소, 산지출하자 4명, 도매시장법인 3명, 중도매인 2명, 시장도매인 2명, 관리사무소 1개소

○ 현장 실사

- 산지 ~ 도매시장 출하 ~ 판매 전까지 물류시간 측정

□ 평가 결과(요약)

《 운영 성과 》

① 출하(구매)자의 출하(구매) 선택권 확대 기여

〈 설문 조사 〉

* (출하자) 출하선택권 확대 기여 응답 : 긍정 60.0%, 보통 30.5%, 부정 9.5%
* (구매자) 구매선택권 확대 기여 응답 : 긍정 68.5%, 보통 24.7%, 부정 6.8%

구 분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출하자	47.9%	12.1%	30.5%	7.6%	1.9%
구매자	56.6%	11.9%	24.7%	5.0%	1.8%

② 시장도매인제 거래규모 성장

- 개장 이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는 타 시장 대비 거래실적이 큰 폭 증가했음은 물론, 경매제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함

* ′05~‘14 성장률 : 시장도매인제 57.1%↑, 가락시장 18.9%↑, 공영도매시장 평균15.8%↑

(단위 : 천톤)

		2005년	2014년	성장률
가 락 시 장		2,031	2,416	18.9%
강 서 시 장	계	407	627	54.1%
	경매제	204	307	50.5%
	시장도매인제	203	319	57.1%

③ 경쟁우위 유통단계 및 유통비용

가. 유통단계 축소

* 시장 내 반입 시 ~ 도매인 상품 인도 완료 시 : 경매제 4단계(3.5~9.5시간 소요), 시장도매인제 1단계(2시간 이내 소요)
* 강서 시장도매인제 화물차 대기 단축 효과 : 연간 약 15억원

나. 유통비용 절감

* 위탁 판매의 경우, 강서시장 경매제 대비 시장도매인제는 약 9.6% 유통비용 절감 효과 발생

다. 물류비용 절감

* 파 렛 트 화 : 시장도매인제 39.2% / 경매제 13.6%
* 하역비 비중 : 시장도매인제 0.67% / 경매제 1.10%

④ 출하자 수취가격 상승

〈 설문 조사 〉

* (출하자) 경매제 대비 시장도매인제 가격 만족 : 긍정 29.5%, 보통 51.4%, 부정 19.1%
* (구매자) 경매제 대비 시장도매인제 가격 만족 : 긍정 36.5%, 보통 55.8%, 부정 7.7%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출하자	3.7%	25.8%	51.4%	16.6%	2.5%
구매자	3.2%	33.3%	55.8%	6.8%	0.9%

〈 통계 분석 〉

* ′10년~′14년 강서시장 주요 10개 품목(과실5/채소5, 거래비중 55.4%) 거래단가 분석결과, ‘포도’를 제외한 9개 품목 거래단가 시장도매인제 우위

(단위 : kg/원)

	구 분	감귤	사과	포도	복숭아	감
과실류	경매제(A)	1,392	2,398	2,864	2,712	1,489
	시장도매인제(B)	1,651	2,709	2,852	2,964	1,661
	대비(B/A)	118.6%	113.0%	99.6%	109.3%	111.6%
	구 분	양파	배추	무	수박	파
채소류	경매제(C)	707	438	430	1,055	1,339
	시장도매인제(D)	778	482	437	1,276	1,524
	대비(D/C)	110.0%	110.0%	101.6%	120.9%	113.8%

⑤ 경매제 시장 대비 높은 시장 운영 효율성

- 경매제 대비 시장도매인제 시설면적은 1/3수준(부지면적은 1/2 수준)이나, 거래물량은 104.1%, 금액은 144.4% 수준임

* (단위면적당 처리물량) 경매제시장 대비 288.8%
* (단위면적당 처리금액) 경매제시장 대비 400.4%

구 분			단위	계	경매제(A)	시장도매인제(B)	대비(B/A)
기본정보	거래물량 (A)		톤	627,204	307,252	319,952	104.1%
	거래금액 (B)		백만원	885,532	362,324	523,208	144.4%
	시설면적 (C)		㎡	114,806	84,378	30,428	36.1%
효율분석	면적대비	A/C	kg/㎡	5,463	3,641	10,515	288.8%
		B/C	천원/㎡	7,713	4,294	17,194	400.4%

⑥ 시장도매인 출하자 대금 정산(결제) 만족도 향상

〈 설문 조사 〉

- 출하자는 시장도매인 대금결제 안전성 및 대금정산 처리기간(시간)에 대해 대체로 만족

* 대금결제 안전성 : 긍정 83.7%, 보통 6.3%, 부정 10.0%

* 대금결제 신속성 : 긍정 73.3%, 보통 18.2%, 부정 8.5%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안전성	58.4%	25.3%	6.3%	7.3%	2.7%
신속성	26.1%	47.2%	18.2%	6.6%	1.9%

〈 통계 분석 〉

- ′10년~′14년(5개년간) 대금정산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판매 후 평균 1.11일로 신속한 출하자 정산 실시

* 연도별 정산 처리 기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 균
지급일수	1.40	1.57	1.47	0.88	0.23	1.11

⑦ 도매시장 탄력적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조성

〈 설문 조사 〉

- 과거 위탁상의 폐해에도 불구, 10여년 간 시장도매인제도 정상적 운영으로 시장도매인제 확대에 대해 출하자 및 구매자 모두 우호적

* 동일시장 내 병행 적정 여부

- (출하자) 긍정 51.1%, 보통 38.5%, 부정 10.4%
- (구매자) 긍정 66.6%, 보통 20.6%, 부정 12.8%

구 분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부적정	매우 부적정
출하자	7.6%	43.5%	38.5	5.8%	4.6%
구매자	15.5%	51.1%	20.6	9.1%	3.7%

* 다른시장 도매인제 확대 여부

- (출하자) 긍정 53.6%, 보통 31.1%, 부정 15.3%
- (구매자) 긍정 55.3%, 보통 31.0%, 부정 13.7%

구 분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부적정	매우 부적정
출하자	15.1%	38.5%	31.1%	11.2%	4.1%
구매자	11.0%	44.3%	31.0%	7.3%	6.4%

《 문제점 》

① 유통정보 제공 다소 미흡

- FGI 등을 볼 때, 출하자와 구매자는 대부분 장기간 단골거래로 유통정보 제공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외부 지적 등을 감안할 대 정확한 유통정보 공개 확대는 지속적 필요

〈 설문조사 〉

* 시장도매인 유통정보제공 불만족

- (출하자) 불만족 29.2%, 보통 26.7%, 만족 41.3%
- (구매자) 불만족 35.2%, 보통 24.2%, 만족 37.4%

구 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출하자	11.0%	18.2%	26.7%	34.0%	7.3%
구매자	15.1%	20.1%	24.2%	29.2%	8.2%

② 시장도매인제 홍보 부족

- 시장도매인과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출하자와 구매자도 약 15% 정도 나타났으며, 시장도매인제 거래 물량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4% 비중임을 감안할 때, 다수의 출하자와 구매자가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음

〈 설문 조사 〉

* 시장도매인제 인지도

- (출하자) 잘 알고 있음 69.3%, 잘 모르고 있음 30.7%
- (구매자) 잘 알고 있음 83.6%, 잘 모르고 있음 16.4%

구 분	잘 알고 있음	잘 모르고 있음	계
출하자	408명(69.3%)	181명(30.7%)	589명(100.0%)
구매자	183명(83.6%)	36명(16.4%)	219명(100.0%)

2 시장도매인제 발전(개선) 방안

1 유통정보 공개부문

○ **필 요 성**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시장도매인제 거래정보 불투명성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
- 현재도 경매제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원시 거래정보 정밀(확)성에 있어 전자경매 수준으로 보완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시장도매인제 거래정보 불투명성 문제 해소

○ **개선 방안**

- 「상품 반입 - 판매 - 계산서 발급 - 정산」 일괄(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거래정보 투명성 확보
- (출하자/도매인) 전자송품장 발송_→ (도매인/하역원) 물량 확인 → (정산소) 송품장 확인 → (도매인) 판매즉시 단가입력 → (도매인) 계산서 발급 → (도매인) 정산/대금지급 신청 → (정산소) 대금 지급

○ **기대 효과**

- 전자송품장 사용에 따른 물량탈루 및 판매이력 확인 기본정보 제공
- 판매이력 확인과 세금계산서 연계를 통한 거래투명성 확보
-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유통정보 제공 가능 등

2 가격변동 안정화 부문

○ **필 요 성**

- 선진국 도매시장의 경우 매수비중이 높은데 반해, 강서 시장도매인제는 매수거래 비중이 낮을뿐더러 더욱이 이마저도 수입산 과일에 편중되어 있어, 가격 변동 안정화 역할 미흡

○ **개선 방안**

- 매수거래 확대를 위해 1)공동정산조직을 활용한 충분한 자금력 확보 2)예약 상대매매 확대 방안 강구 3)공동마케팅조직 설립 등을 통한 대량수요처 유인 등이 필요함

3 시장도매인제 규모화 부문

○ **필 요 성**

- 시장도매인 거래규모는 연 20억원~250억원까지 다양함에도 획일적으로 동일면적(167㎡)을 배분함에 따른 시장도매인시장 공간 이용 불합리성

○ **개선 방안**

- (단기) 2016년 신축 예정 중인 소음방지유통시설에 거래 우수자 우선 배정
- (중기) 시설사용료 부과 방식 변경(면적50%+거래금액50% → 면적 100%) 추진을 통한 영업 부진자 퇴출 및 규모화 유도

※ 프랑스 헌지스 도매인 : ('70년대) 450개소 → ('14년) 190개소

4 시장도매인제 홍보 강화 부문

○ **필 요 성**

-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볼 때, 시장도매인제도는 여전히 낮은 인지도와 오해(과거 위탁상과 동일시)가 있음

○ **개선 방안**

- 이벤트 홍보, 언론매체 홍보, SNS 홍보, 학술 포럼 및 세미나

3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사점

1 도입 시 고려사항

○ **통합정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거래정보 공개로 시장도매인제 시장 유통정보투명성 확보**

○ **공동정산조직 운영을 통한 출하자 대금결재 불안요소 해소**

2 도입 방안(기본 방향)

○ **점포면적 차등화(규모화)**

- 총 면적은 강서시장 대비 가락시장 거래규모가 4배이고,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면적 효율이 경매제 대비 3배 정도임을 감안하여 시장도매인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적정
- 점포 배정은 획일적 규모의 배정이 아닌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쟁에 따른 진출입 용이를 위해 임대료 책정방식이 적정

○ **시장도매인 구성 다양화**

- 통합부류 시장도매인 도입을 통한 자체 상품 구색 확보 유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체의 시장도매인 참여 유도

ex) 도매시장법인의 시장도매인 전환, 수출입 시장도매인 도입, 친환경 청과전문 시장도매인 도입, 생산자단체 시장도매인 참여

○ **대량구매처를 위한 공동집배송센터, 저온창고 등 설치**

○ **두 거래제도 간 갈등 완화를 위한 공간의 물리적 분리**

③ 기대 효과(필요성)

1) 공영도매시장의 대응력 및 경쟁력 제고

가. 변화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산지 규모화 및 신(新)유통주체 성장으로 탈(脫)도매시장(경매제시장) 가속화
-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경매제시장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영도매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

나. 제도 간 선의의 경쟁구조 형성

- 양 제도 간 병행 운영되었던 사례를 보면, 강서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제 57.1%, 경매제 50.5% 성장해 동 기간 가락시장(18.9%), 공영도매시장 평균(15.8%) 보다 크게 성장하였으며,
- 대구북부도매시장 수산시장도 2008년 시장도매인제 전환 후 연평균 21.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다. 상호 보완적 경쟁구조 형성

- 시장도매인제 병행에 따라 경매제가 위축되고 도매시장의 가격 발견기능 및 기준가격이 상실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나,
- 향후 시장가격 형성은 공영도매시장과 민간분야(대형유통업체)와의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가격 발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2) 가락시장의 과밀구조 해소

- 가락시장은 국내 최대 도매시장이며 설계물량 대비 1.6배를 거래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경매시간 전후로 극심한 혼잡을 보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가 되겠지만,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반입 및 판매시간 분산 등으로 시장 혼잡도 개선에 유리할 것임

3) 가락시장 경매제 시장구조의 문제점 해소

가. 경매제시장 문제점은

1)유통속도 지연으로 인한 상품성 훼손 (신선도 저하)

2)친환경, 소포장, 전처리 농산물 등 거래 제약으로 인한 취급 한계

3)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한 과도한 물류비용 발생 등이 있음

나. 시장도매인제도는 위에서 적시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 거래제도임

4) 국내 청과류 유통 선진화 촉진

- 국내 대표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상품규격화, 표준화, 파렛트화를 촉진할 것이며, 향후 운영 방안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거래규모 확대, 수출입 농산물 거래 확대, 전처리 소포장 거래 등을 경매제에 비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위축되는 공영도매시장의 신활력 및 신성장 동력 제공

- 1980년대 공영도매시장(가락시장) 도입 후,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확대는 공영도매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촉발시키고, 외부 대형유통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안건 2

시장도매인 시장사용료 부과 방식 변경 검토

2016. 2. 2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시장도매인 시장사용료 부과 방식 변경 검토

1 시장도매인 시장사용료 부과 현황

□ 부과 근거

○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징수할 것

○ 「서울시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7조(시장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2항 제1호 및 제2호

1.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2.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 부과 경과

○ 2004. 6월 ~ 2005. 8월 거래금액 기준으로 시장사용료 부과

○ 2005. 9월부터 현행 방식으로 부과(면적 50% + 금액 50%)

〈 시장도매인 개장 전·후 시장사용료 비교 〉

(단 위 : 원)

연도	과일(30개사)	채소(22개사)	합계(52개사)	채소비중	비고
2004	470,523,570	126,503,500	597,027,070	21.2%	거래액100%(6.14개장)
2005	996,100,680	330,166,130	1,326,266,810	24.9%	9.1부터면적+거래액
2006	1,035,462,200	525,437,520	1,560,899,720	33.7%	-

2 시장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건의

□ 2015년 이전 시장도매인연합회 시장사용료 부과 관련 건의(총 2회)

① 1차 건의(2009. 5월)

(현 행) 거래금액 50% + 시설면적 50% → (건 의) 거래금액 100%

⇒ 법규 취지 및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으로 변경 불가

② 2차 건의(2012. 9월)

- 1차 건의 안과 동일한 거래금액 100% 기준 시장사용료 부과하되, 거래 금액 월 15억 이상 인센티브 부여, 월 1억 2천만원 미만 페널티 부여

⇒ 시장 활성화 저해, 물량 탈루 등으로 변경 불가

□ 2015년 시장도매인연합회 시장사용료 부과 관련 건의(총 3회)

③ 3차 건의(2015. 1월)

- 전체 회원사가 동의한 2차 건의('12.9) 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요청

⇒ 확인 결과, 전체 회원사가 아닌 채소부류 회원사(22개사) 만이 동의한 조정 건의(안)으로 전체 회원사 동의 시 조정 변경 검토 회신

④ 4차 건의(2015. 6월)

- 연합회 산하 시장사용료 개선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정 안 건의

(제1안) 거래금액 100%, (제2안) 채소 및 과일부류 구분 부과

⇒ 채소부류 만의 합의사항으로 조정 건의안에 대한 개별 합의가 있을 경우 부과방식 변경 추진 가능 회신

⑤ 5차 건의(2015. 7월)

(건 의) 거래금액 80% + 시설면적 20% 기준으로 시장사용료 부과

- 찬성(37개사) : 채소부류 22개사, 과일부류 15개사
- 반대(15개사) : 과일부류 15개사

⇒ 부과방식 변경에 대한 시장도매인 공감대 미흡(찬반 대립)하여 조정 건의(안) 방식으로 변경 애로

3 최근 건의 사항 반영 검토

□ 제5차 건의 내용('15. 7)

(현 행) 거래금액 50% + 면적 50% → **(변 경) 거래금액 80% + 면적 20%**

□ 건의 사유

○ 개장 당시 **채소와 과일을 구분**하여 **시장도매인 모집**

○ 과일부류 시장도매인 대비 **채소부류 시장도매인 경영 저조**

* 채소 대비 과일부류 시장도매인 당기순이익 59%↑, 영업이익율 34%↑('13년 기준)

○ 청과부류 취급허가는 동일하지만 **실제 취급품목 특(수)성 감안 필요**

* 채소는 과일보다 부피가 크고, 쉽게 부패하는 반면, 거래단가는 낮음

○ 시장도매인 중장기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13.6월, 건국대학교)

* (단기) 취급 부류별 부과, (장기) 거래금액 0.5% 이내 임대료 차등 부과

□ 검토 내용

〈 거래금액 80% : 면적 20% 적용 시 시장사용료 변화 〉

구 분	2014년 채소부류 납부액(만원)					2014년 과일부류 납부액(만원)				
	계 (비중)	평균 (월평균)	최소 (월평균)	최대 (월평균)	증감 도매인수	계 (비중)	평균 (월평균)	최소 (월평균)	최대 (월평균)	증감 도매인수
금액50% (현행)	87,614 (34%)	3,983 (331)	2,859 (238)	5,882 (490)	-	169,551 (66%)	5,652 (471)	3,767 (314)	8,930 (744)	-
금액80%	74,980 (29%)	3,408 (284)	1,603 (134)	6,405 (534)	-	182,186 (71%)	6,073 (506)	3,021 (252)	11,340 (945)	-
현행 대비	-12,634 (-5%)	-575 (-48)	- 1,256 (-105)	523 (44)	3개 + 19개 -	12,634 (+5%)	421 (35)	- 746 (-62)	2,410 (201)	16개 + 14개 -

○ 채소부류 시장사용료는 시장도매인 **1개사 평균 월 48만원을 덜 납부**하게 되며, **최대 월 105만원을 덜 납부**하게 되는 시장도매인도 발생

○ 과일부류 시장사용료는 **시장도매인 1개사 평균 월35만원을 더 납부**하게 되며, **최대 월 201만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 시장도매인도 발생

○ 거래실적이 우수한 시장도매인의 시장사용료 부담 가중으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강서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취지 저해 우려**

4 시장사용료 부과방식 변경 추진(안)

- 기존 거래금액(50%)과 면적(50%) 적용 기준은 유지하되, 채소부류 거래특성을 감안하여 면적 적용 기준 변경
-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시장도매인별 시장사용료 증감을 최소화하고, 부담 증가 시장도매인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 조정 추진
- 부과방식 변경으로 수혜를 보는 거래실적 저조 시장도매인에 대한 거래실적 제고를 위해 월간 최저거래실적 기준 상향 추진

□ **변경안 : 채소부류 상품 특성(부피 크고 단가 저렴) 등을 감안하여 단위 면적당 거래단가(최근3년 기준 과일 톤당 2,250천원, 채소 톤당 1,230천원)를 면적할 50%에 반영하여 시장사용료 변경**

구 분	2014년 채소부류 납부액(만원)					2014년 과일부류 납부액(만원)				
	계 (비중)	평균 (월평균)	최소 (월평균)	최대 (월평균)	증감 도매인수	계 (비중)	평균 (월평균)	최소 (월평균)	최대 (월평균)	증감 도매인수
현행적용 면적50%	87,614 (34%)	3,983 (331)	2,859 (238)	5,882 (490)	-	169,551 (66%)	5,652 (471)	3,767 (314)	8,930 (744)	-
면적 변경	**78,283 (30%)**	**3,558 (297)**	**2,434 (203)**	**5,451 (454)**	-	**178,882 (70%)**	**5,963 (495)**	**4,081 (340)**	**9,239 (770)**	-
현행 대비	**-9,331 (-4%)**	**-425 (-34)**	**-425 (-35)**	**-431 (-36)**	**0개 + 22개 -**	**9,331 (+4%)**	**311 (24)**	**314 (26)**	**309 (26)**	**30개 + 0개 -**

○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확보(5년 마다 재산정)

○ 채소부류 시장도매인 중 거래실적 미흡 시장도매인 거래활성화 촉진을 위해 분기별 최저거래실적 상향 추진(월간 2억원 → 3억원)

□ **향후 계획**

○ 시장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협의체 구성 운영(3월~) : 부류별 2~3명 참여

○ 공사 조정안을 토대로 시장도매인과 우선 협의하되, 추가 조정안 요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

○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관련법령 또는 도매시장 조례 개정 건의

안건 3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설립 추진 보고

2016. 2. 2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설립 추진

1 법적 근거 및 기대 효과

□ 설립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41조의 제2항

○ 별도 정산창구(대금정산조직 포함)를 통한 출하대금 결제 의무화

□ 운영 절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6조

○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거래에 대한 정산창구 이용에 대한 절차 명시

송품장작성, 제출 (출하자 →시장도매인) ➔ **거래신고소 제출** (출하자 →시장도매인) ➔ **정산서 발급** (출하자 →시장도매인) ➔ **대금결제** (정산창구→출하자)

□ 현행 출하대금 지급 방식과의 비교

구 분	현 행(개설자 전용계좌 이용)	정산조합 운영
정산방법	공사의 정산시스템을 이용한 시장도매인 전용계좌 직접송금	정산조직 책임하에 출하대금 송금
출하대금 정산책임	개별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담보수단	거래보증금 6,000만원	거래보증금 6,000만원 + 정산조합 출자금
출자금 확 보	없음	개별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운영자금 출자 필요
운영비 부 담	없음	정산수수료 징수를 통한 정산조직 운영경비 조달 필요

□ 정산 조합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 시장도매인의 직접 출하자 결제가 아닌 정산을 대행하는 정산조직에서 판매대금에 대해 지급 보증
- 대금결제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통한 출하농산물 지급확인 프로세스
- 정부, 학계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고 출하자의 신뢰도 향상 및 시장도매인 영업지원

2 정산조합 설립 기본 방안

□ 정산조합 설립 개요

○ 설립형태 : 개설자 인가를 득한 사단법인 형태

○ 자 본 금 : 최소 36,6억 (금융기관 신용여신확보 31.4억 별도)

- 운영자금 총 68억

○ 조직구성(예정) : 5명(대표 1, 상무 1, 직원 3)

□ 정산조합 출하대금 정산방식 : 가락정산 회사와 유사

○ 시장도매인 판매 당일 송금결제(정산조합 전용 계좌)

- 출하자에게 선(先) 지급, 후(後) 시장도매인에게 회수

○ 정산조합 대금정산 프로세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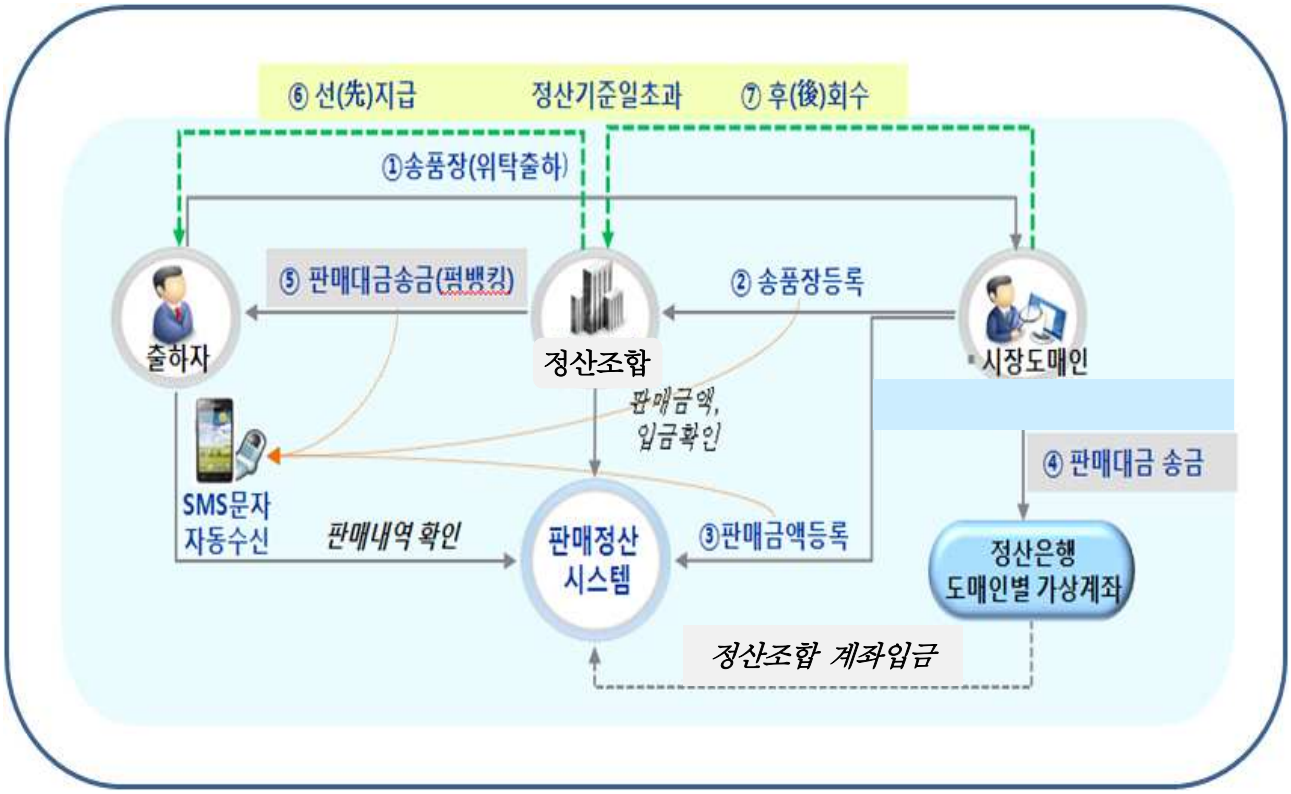

□ 정산 수수료 : 52개 시장도매인별 월 15만원 정액부담(예정)

○ 기존 시장도매인 연합회 물적 자원(사무실 등) 및 인력활용에 따른 추가 인력(2명) 인건비 등 정산조합 제반 운영비 충당

□ 정산조합 관리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 정산조합 경영 참여(사외이사 등)

○ 공사 업무감사 정례화, 연 1회 외부회계감사 실시

○ 정산프로세스 과정 공사의 상시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실시

○ 정산조직 정관, 운영관리 규정 개정시 공사 사전 승인 의무화

○ 정산조합 운영시 유통정보(실시간 가격/물량정보) 공개 의무화

⇒ '조례 및 시장도매인관리규정' 개정 및 '조합 정관' 명시

3 향후 계획

□ 정산조합 출자금 확보 및 정산조합 출범

○ '16.1~3 전체 시장도매인 신용평가 후 자본금 규모 확정, 출자

○ '16.3 정산조합 정관 확정,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 '16.3~4 조합원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이관, 통장 새설 및 체크카드 발급

□ 대금정산 통합 정산시스템 구축 운영

○ '16.2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후속 계약 체결

○ '16.1~3 기업은행과 시스템 연계를 위한 HW·SW 개발 설치

○ '16.2~3 정산조합 홈페이지 및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 '16.3 공사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재설계

○ '16.4~5 정산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시범 운영

□ 정산조직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

○ 정산조합 운영 대외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 4

유통시설 건립 및 방음벽 설치 추진 보고

2016. 2. 2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유통시설 건립 및 방음벽 설치 추진

1 추진 경위

□ 강서시장 인근 마곡14단지 입주민들의 소음민원 지속발생('14.7 ~)

○ 주민 소음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차폐시설 건립 필요

□ 강서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유통시설 신축 추진 필요

○ 시장도매인 중장기 발전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13.6.30)

⇒ 시장도매인 영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부족한 점포와 상온창고 등 부족한 유통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성 대두

□ 서울시 마곡 현장시장실 정책 토론회 결과 조치요구(8.30)

조치요구사항	정책 토론회 결과
강서 농수산물시장의 심야 소음 대책 마련	· 아파트 단지와 농수산 시장 사이에 방음벽설치 및 농수산시장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치 추진 ⇒ 사업비 확보, 추진일정 등은 SH공사와 농수산식품공사 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

2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사업규모 : 점포 8개소 + 상온창고 16개소 + 상부 방음벽

- 조례상 시장도매인 정수 60개(현 52개)

○ 총사업비 : 9,269백만원 (사업기간 : 2014.12월 ~ 2017.6월)

- 2016년도 사업비 : 3,065백만원

□ 사업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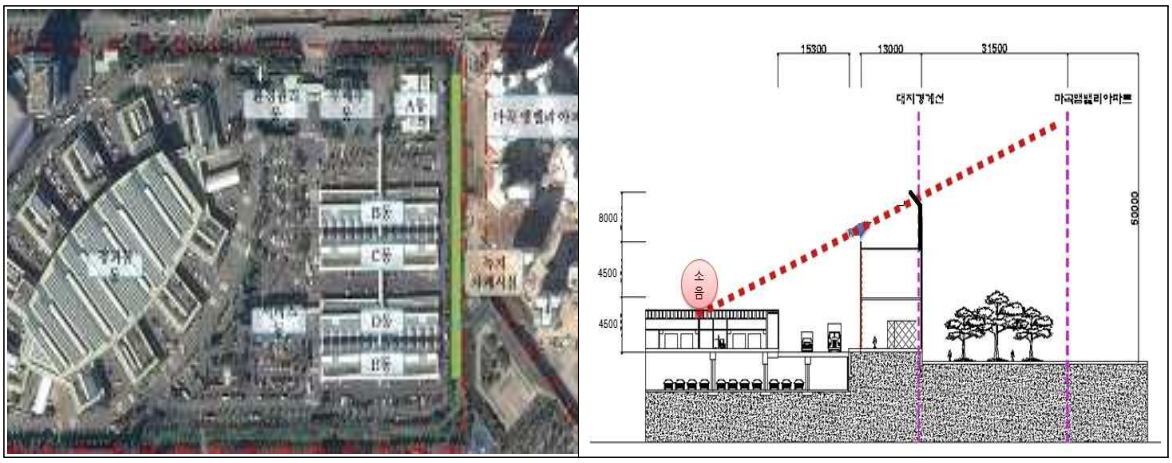

□ 사업 효과

○ 강서시장동 증축을 통한 시장 거래활성화 도모 및 마곡 14단지 주민 소음민원 근원적 해소효과로 강서시장 안정적 운영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영업여건 개선 및 활성화 도모

3 그 동안 추진 사항

1 이해관계자(공사, SH공사, 입주자대표 협의회) 협의실시('14.9월)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차폐시설 및 유통시설 건립	가로공원조성 및 방음벽설치비부담

2 차폐시설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실시('14.10월~11월)

○ 경제적 타당성 : 연구용역결과 B/C(편익비용 비율)이 1.22로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

3 차폐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14.12월)

4 녹지 내 산책로 조성 공사 (SH공사, '14.11월~'15.6월)

5 전신주 · 통신선 등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15.1월~6월)

6 차폐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15.6월 ~'16.1월)

7 공사 착공('16.6월)

안건 5

강서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검토

2016. 2. 2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강서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1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 적 : 강서시장의 실질적 거래 활성화 추진 방안 검토 및 실행

□ 구 성 : 관계기관, 유통인, 생산자 · 구매자, 전문가 등 20명

○ 추진위원회 : 21명(기관2, 생산자2, 구매자1, 전문가6, 법인3, 중도매인3, 시장도매인3)

○ 실무위원회 : 12명(법인3, 중도매인3, 시장도매인5, 공사 1)

□ 추진 경과

○ 강서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15.3.5)

○ 활성화 아이템 검토 및 발굴('15.2. ~ 3)

- 분과별 활성화 아이템 설정

· 중도매인 소속제의 실질적 폐지 등(경매 분과)

· 시장도매인 정산조직 운영 등(시장도매인 분과)

· 중소상인 공동 물류 효율화(분과 공통)

○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 실무위원회 6차, 8회(3.18, 4.15,5.20,6.17, 7.14, 8.26~28.), 95명 참석

- 전문가 위원회 1회(3.24.), 13명 참석

· 참석 : 13명(생산자2, 구매자1, 전문가3, 공사 7)

· 고객가치 세분화, 차별화 전략(예; 중소식당 전문시장) 등 조언

□ 주요 추진 성과

○ 도매법인 수입과일 상장수수료 자율 인하(일부 5~4%, 그 외 2%)

○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 내규 개정 완료('15.12.1)

○ 중소상인 공동 물류 시범사업(공동 구매 및 판매협약 체결) 실시

2 주요 활성화 대책 검토 사항

1 중도매인 소속제의 실질적 폐지

○ **검토 배경**

- 도매시장법인에 예속된 종전의 중도매인 소속제는 농안법상 폐지되었으나
- 중도매인 권익보호 목적으로 조직된 친목단체인 중도매인조합이 비조합원의 경매 참여에 배타적 태도로 사실상의 소속제가 존치되고 있는 상황

○ **현황 및 문제점**

- 중도매인 조합에서 신규 조합 가입자에게 가입비 징수
- 기득권 잠식 우려로 비조합원·매참인의 경매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

▟▟ 중도매인 의견

⇒ 실적 우수자는 유리하나, 실적 미약자는 도태되어 전체 중도매인 의견 수렴 필요

▟▟ 도매시장법인 의견

⇒ 각 도매시장법인간 무한 경쟁이 우려되나, 대승적 차원에서 공사 의견 존중

○ **검토 의견**

- 신규 중도매인 모집시 도매시장법인 구분없이 강서시장 전체로 모집(종전에는 방침으로 도매시장법인별 구분 모집) 및 점포 배정
- 신규 중도매인이 자유롭게 주거래 도매시장법인 선택토록 유도

2 중도매인 직접 거래 제도 도입

○ **검토 배경**

- 농산물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거래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
- 소량거래 및 경매부진 품목에 대한 중도매인 직접 거래 도입으로 시장 활성화 도모

○ **중도매인 직접 거래 제도 개요**

- 해당 농산물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 품목의 특성으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 기타 상장거래가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수탁·위탁 거래
- 직접 거래 중도매인의 준수사항(도매법인 규정 준용)
  · 표준하역비 부담, 정산창구를 통한 대금 결제, 시장사용료, 위탁 수수료 등

▟ 중도매인 의견

⇒ (과일·트럭) : 중도매인 직접거래 보다는 정가수의 수수료 인하 방식으로 진행 건의

⇒ (채소) : 중도매인 직접거래 조속 도입

▟ 도매시장법인 의견

⇒ 정가수의매매 수수료 인하 방식 도입 건의

※ 서부청과(주) 수입과일 정가수의매매 수수료 인하 :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오렌지 4%, 그 외 수입과일 2%

○ **검토 의견**

- 중도매인 직접거래 제도 도입 검토

⇒ 출하대금 결제 안전장치(정산 조합 가입 등) 마련 후 진행

- 정산조직 구성 운영 필요